

훈령

10/10  
훈령제 362호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 181 (전화번호 307)	전결규정	조 1
회리기간	제 1 부 시 장	시	강
시행일자	강 성 회		
보존년한			
보 조 기 관	기획관리관	법무 부 장 관 인 인 인	시 인 인 인
	법무 과장		
	법제 계장		
기안책임자	강 성 회	22. 10. 12	조 1 관리계장
경유 수신 참조	강 안 참 조	발 신	검 인 1017 사 장 인 인
제 목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규정 제정		
화재예방과 진압 및 사후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보다 효율적			
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종합소방행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법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정 인
			인
			인
			인

0201-1-8A

190mm x 268mm 백상지 40g/m<sup>2</sup>

1969. 11. 10. 승인

0378

( 룠 령 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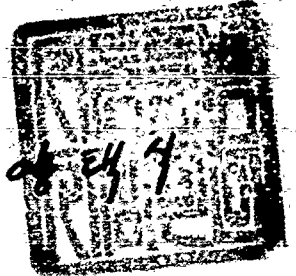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헌법 제 3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화재예방과 진압및 사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효율적인 방  
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재예방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3.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4. 소방을 수거시설 확보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1)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2) 위원은 기획관리관, 내무국장, 소방본부장, 성소국장, 도시계획국장, 보건  
사회국장, 수도국장, 산업국장, 경찰국장, 공보심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회 관이국장및 안국전력주식회사 영업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직무) (1) 위원장은 직무를 총이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6조(건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사와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사와 서기를 둔다.

(2) 관사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방행정과 사무계장이 된다.

제8조(시행 계획)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2년 10월 25일 부칙 시행한다.

제 정 의 용

화재예방과 진압및 사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소방소방행정의 필요  
를 기두키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자료 자연 운동 "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소 방 181 - 1130

1972. 10. 5.

수 신 본부국장

거 목 소방대추 위원회 구성 검토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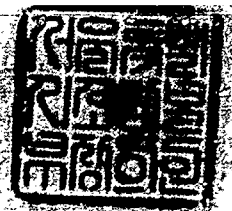
1. 본부 181-3307 (72. 10. 4.) 의 회신입니다.

2. 회신 귀국 " 조장안 " 대로 재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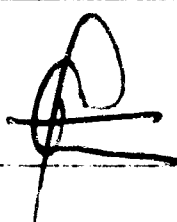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 서울을 운동의 거수기하자 "



#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22.10.1 -3307  (전화번호 307)	결정규정 과장	조 합 지정사항
제정기관	법 주 과 장		
시행일자	12.10.4		
비고사항			
보 조 기 관	법 제 제 장		법    조
기안책임자	강성희	가 10 2	
경 수 장	도청행정과 과장	발 시	과 장 봉 서
사 목	소방대책위원회 규정 제정		
1. 소방, 10-1017 (제 10-17) 와 관련입니다.			
2. 취 의 사항에 대하여 상과 규정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후 취 의 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규정안 1 부 송			

정 서  
  
 파 인  
  
 날 음  
  


0201-1-8A

190mm x 268mm 매 사 지 408/매

1968. 11. 10. 송안

0384

( 조 정 안 )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화재예방과 진압및 사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재예방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3.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 시설 확보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1)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제1부 시장이 된다.

(2) 위원은 기획관리관, 네무국장, 소방본부장, 청소국장, 도시계획국장, 보건사회국장, 산업국장, <sup>수도국장</sup>경찰국장, 공보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교육위원회 관리국장및 한국전력주식회사 영업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외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건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방행정과 서무계장이 된다.

제8조(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부 칙~~은 공포한 날로 부칙 시행한다.